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 집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비대면 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하였음.
- **(결함보상 리콜 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국가통합인증(KC)을 취소 조치함.
- **(결함보상 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수소이온농도지수(pH)기준 위반(중결함) 및 국가통합인증 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함.

*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0년 9월~10월

▶ 조사대상 :

- (어린이)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
- (전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 (생활) 고정식 자전거, 스탬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결함보상 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 완구 14개	
액체괴물 (11개 제품)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하였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
승용, 게임완구 등 (3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
실내 놀이용품 18개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
트램펄린 (13개 제품)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여가용 전기용품 5개	
화재·화상 위험 (5개 제품)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마스크 제품 3개	
면마스크 (3개 제품)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되어 결함보상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11. 04.)